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14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 박덕흠 • 서천호 • 김예지

구자근・강승규・이종배

고동진 · 김정재 · 김선교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조합장과 농업인단체 및학계 등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이를 감사 및 시정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도 단 한차례 응하지 않으며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 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 125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두고, 인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운영"을 "심사 및 운영"으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인사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 및 영상녹화물을 작성·녹화하여야 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⑥ 인사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제5항에 따라 기록된 회의록 및 영상 녹화물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	
회를 <u>둔다</u> .	두고, 인사추천위원회는 재
	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u>야 한다.</u>
<u><신 설></u>	⑤ 인사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
	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
	의록 및 영상녹화물을 작성 • 녹
	화하여야 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
	<u>다.</u>
<u><신 설></u>	⑥ 인사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제
	5항에 따라 기록된 회의록 및
	영상녹화물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	<u>⑦</u>
성과 <u>운영</u> 에 필요한 사항은 정	<u>심사 및 운영</u>
관으로 정한다.	<u>.</u>